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66
----------	-------

발의연월일 : 2026. 7. 21

발 의 자 : 백승아 · 박해철 · 권향엽
박희승 · 김문수 · 김준환
황정아 · 이재강 · 정일영
장철민 · 이용선 · 박 정
윤후덕 · 곽상언 · 임미애
송재봉 · 김현정 · 고민정
의원(18인)

제안이유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교육활동 침해 문제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임. 최근 3년간(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는 매년 4천 건 이상 이루어졌고, 2025년 한 해 16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5만 7,966건에 달함. 또한,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아동학대 신고가 1,352건에 이르는 등 아동학대 신고 제도가 악용되는 문제도 심각한 수준임.

교원은 국가를 대신하여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임. 따라서 정당한 교

육활동이 침해되거나 그로 인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이를 교원 개인이 홀로 감당하도록 두어서는 아니 되며, 국가가 책임지고 교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법률지원단의 지원은 법률 상담 중심에 머물러 있어 조사·수사나 소송 단계에 놓인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정작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안 초기에 조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아울러 그동안 마련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으로 환류하는 체계도 미비함.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조사·수사 또는 소송의 시작 단계부터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평가·조사·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이 법의 목적 및 교원에 대한 예우 규정에 명시함(안 제1조 및 제2조제3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대상에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

다.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조사·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라. 법률지원단의 업무에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 등을 추가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등에는 해당 교원이 조사·수사 시작 단계부터 지체 없이 법률지원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마.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평가·조사·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인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화함으로써”를 “강화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서”를 “제4항까지에서”로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25조”를 “제21조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25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사·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제21조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지원

제21조제1항 중 “법률 상담을”을 “법률 상담 및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이 조사·수사 또는 소송의 시작 단계부터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2.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의 환류에 관한 사항
3.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세부 기준 마련, 예방 대책 수립, 모니터링 및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원을 대상으로 제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 교육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사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를 <u>강화함으로써</u> 교원의 지위 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 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강화하며, 교원의 정당한</u> <u>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u> <u>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명확</u> <u>히 함으로써</u> ----- ----- -----.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u> <u>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u> <u>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u> <u>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u> <u>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u>제3항까지에서</u>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u>제4항까지에서</u> ----- ----- ----- -----.
제16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제16조(실태조사) ① ----- -----

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조치,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제21조에 따른 법률지
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25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삭 제>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법률 상담 및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 등을

-----.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이 조사·수사 또는 소송의 시작 단계부터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2.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
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
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생략)

<신 설>

제29조의3(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의 환류에 관한 사항
3.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세부 기준 마련, 예방 대책 수립, 모니터링 및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원을 대상으로 제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 교육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의 보고에 관
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원
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중앙교육활동
보호센터의 제1항 각 호에 따
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
교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
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사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중앙교육활동보호센
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중앙교육활동보호
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

<u>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